계약 변경 합의서

삼성전자 주식회사(이하 "위탁자"라 한다)와 주식회사 원익홀딩스(이하 "수탁자"라한다)는 2016년 08월 01일 "삼성전자"와 "원익홀딩스"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(공사명:화학물질관리법 서류제출용 공급장치 PnID 신규 작도의 수의계약件)(이하"기존 계약"이라 한다)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다.

-다 음-



제 1 조 (목적)

본 합의서는 "삼성전자"와 "원익홀딩스"가 체결한 "기존 계약"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명시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계약변경사항)

① "삼성전자"와 "원익홀딩스"는 "기존 계약"의 제 5조 (대금지급)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다.

제 5조 (대금지급)

"위탁자는 "수탁자"에게 본 계약 수행에 따른 대가로 총 금일천삼백팔십육만원정(₩13,860,000 /부가가치세 별도)을 "수탁자의 최종 결과물 제출 및 "위탁자"의 승인 통지가 도달한 후 "수탁자"가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.

② "삼성전자"와 "원익홀딩스"는 "기존 계약"의 별첨. "위탁업무 수행계획서" 상의 1. 수량 및 리스트를 본 계약변경합의서의 첨부. "위탁업무 수행계획서" 상의 1. 수량 및 리스트로 변경하기로 합의한다.

제 3 조 (합의서의 효력)

① 본 합의서는 2016년 08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② 본 합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"기존 계약"의 내용에 따르며, 본 합의서 상의 내용이 "기존 계약" 상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본 합의서의 효력이 우선한다.

첨부. "위탁업무 수행계획서"

위와 같이 합의서가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"삼성전자", "원익홀딩스"는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11 월 15 일

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(매탄동) 대표이사 권 오 현

주식회사 원익홀딩스 경기도 평택시 칠괴길 78-40(지재동) 대표이사 이 재 헌 (인)



첨부. "위탁업무 수행계획서"

1. 수량 및 리스트

<원익홀딩스>

GasB	C4F6	C5F8	CL2	HBR	HCl	NH3	BF3	15.PH3.H2	ACPO2	NO	HF	SAM24	10.PH3.N2	CO	Precursor
CAB	50प	7대				14	1대			1대			1대		29대
BUN														7	
BSGS						7대									
신규	1대	1대	애	애	애	24	1대	애	애	1대	애	애	1대	0대	29대
중복	49대	6대	애	매	애	6대	0대	애	애	O대	애	애	애	애	0대
라인중복	43 ^t	4대	애	애	애	4대	0대	애	애	애	애	애	애	0대	0대
+요인	애	애	애	매	애	7대	애	애	매	0대	야	애	애	0대	애
총합	504	7대	애	애	애	8대	1대	애	매	1대	0대	애	1대	애	
총 금액	6,309,761	969,089	-	-	-	1,194,372	168,611	-	-	168,611	-	-	168,611	-	4,889,719
Total															13,868,774
(천 단위 이하 절사)		13,860,000													13,860,000



